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2.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2월 23일 장종태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9. 22.)

상정, 축조심사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1. 18.)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6. 1. 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6. 1. 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종태의원)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였음.

또한,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재의 제도로는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범위가 미취학아동인 만 8세 미만으로 한정됨에 따라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적 효과를 온전히 기대하기 어렵고, 그 지급 금액도 제도적으로 물가연동 등을 통해 주기적인 금액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고정되어 있어 매년 실질 가치

가 하락되고 있기도 함. 더구나 아동 양육비는 아동이 성장하면서 증가하고 있는 등 추가적인 양육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는 경우 양육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제고할 수 있고, 인구 위기 극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아동수당에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할 경우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아동수당 지원금액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아동수당 지급연령 확대는 상당한 규모의 재정이 수반되고, 특히 개정안별로 지급 금액도 상이한 만큼, 충분한 사회적 협의와 논의 과정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아동수당 확대 검토 필요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고려하고,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여 국고 보조율 확대 필요 등

7.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